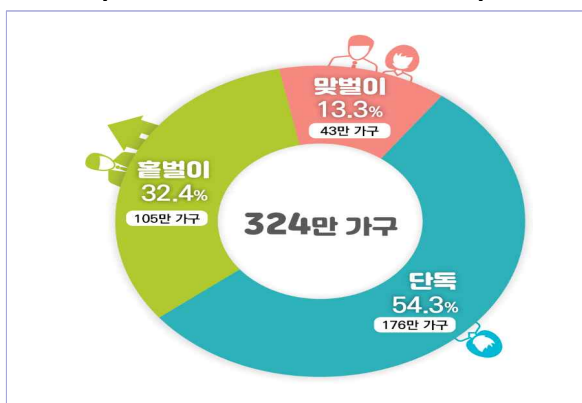


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 원 지원 정기분 근로·자녀장려금,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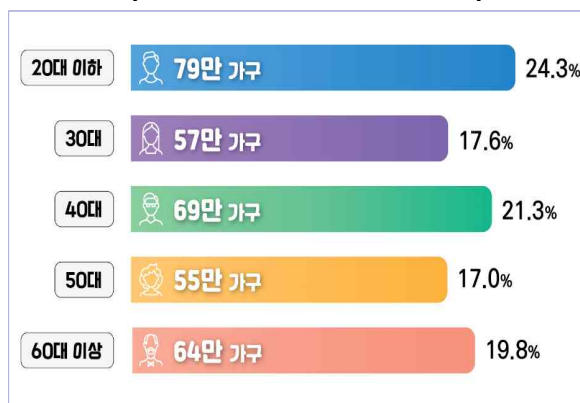
- 모바일·자동응답서비스(ARS)로 간편하게 신청 ... 심사 후 8월 27일 지급 예정

- (신청안내)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.
- 2025년에 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,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·재산 등을 심사하여 법정 지급기한(9월 말)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.
-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%만 지급(5% 감액)된다.

| 가구유형별 안내대상자 |



| 연령대별 안내대상자 |



-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,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.
-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, 반기 신청하였으나 사업·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- (신청대상)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,200만 원, 홑벌이 가구 3,200만 원, 맞벌이 가구는 4,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.
 -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(2025.6.1. 기준)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. 또한,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%만 지급된다.
 -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.
- (신청방법) 안내문을 받은 경우, 서면 안내문의 **큐알(QR)코드**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, 자동응답서비스(ARS)(☎1544-9944)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.
 - 고령자 등 신청대상자가 모바일·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(☎1566-3636)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 -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본인이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하여 **홈택스(PC, 모바일)**를 통해 **직접 신청***할 수 있다.
 - *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《장려금》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《직접입력 신청
 - 아울러, 이번 정기 신청부터 **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**를 도입하여, 시각 장애인 가구가 장려금 안내대상 해당여부, 신청방법 등 안내자료를 점자 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였다.
- (자동신청) 2025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안내대상자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(47.8%)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다.
 -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4월 30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, 홈택스, 자동응답서비스,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.

- 이번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, 향후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(2028년 5월)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.
- (지급액)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 원,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,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.
 - *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
-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(2025.6.1. 기준)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,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.
- (상담지원)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(☎1566-3636)로 전화하여 상담사(평일 9시~18시)에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,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·휴일에는 자동응답서비스(ARS)*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.
 - * [세무서] ☎대표번호》ARS》장려금》AI상담사, [국세상담센터] ☎126》장려금》AI상담사
- 특히, 이번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는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「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」*를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.
 - *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》홈택스 킷 메뉴》챗봇 상담(☎) 클릭
- (유의사항)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,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, 근로·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.
 - * 국세청 발송 메시지(안심마크 적용) : 국세청 로고(🇰🇷), 안심마크(🔒), 안심문구(확인된 발신번호)
- 앞으로도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·상담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복지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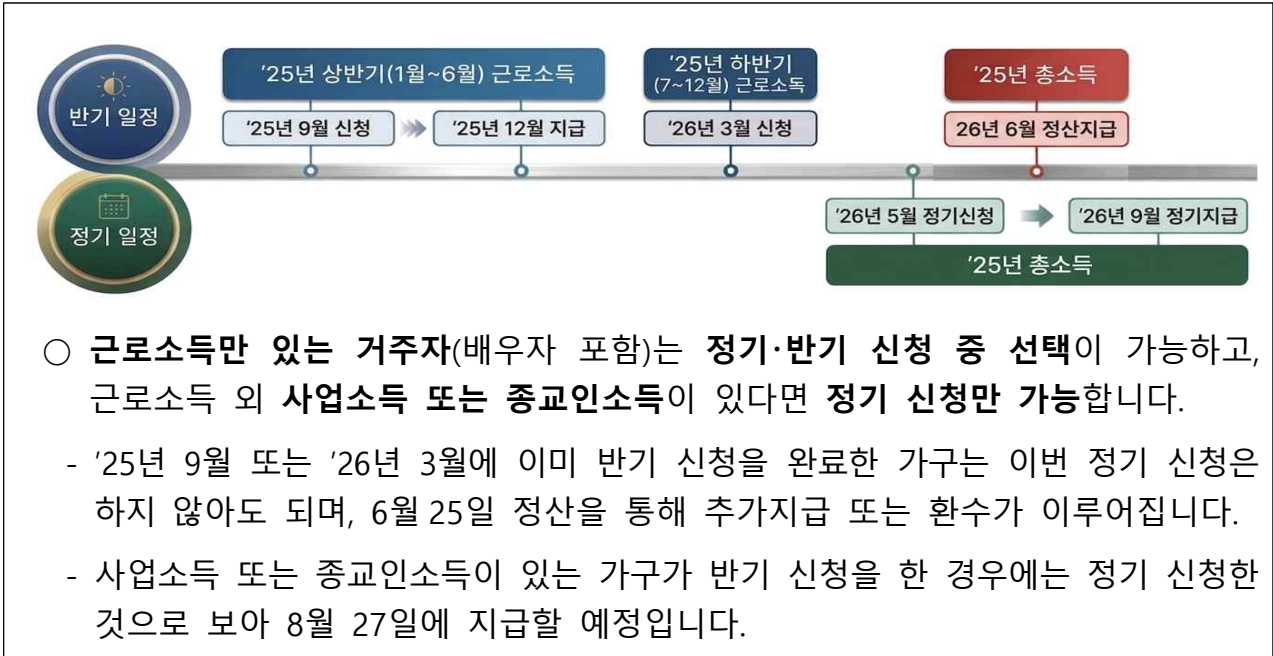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 <총괄>	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	책임자	과 장 정상수 (044-204-3801)
		담당자	사무관 송지원 (044-204-3812)
<협조>	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	책임자	과 장 이용선 (044-204-2551)
		담당자	사무관 정명숙 (044-204-259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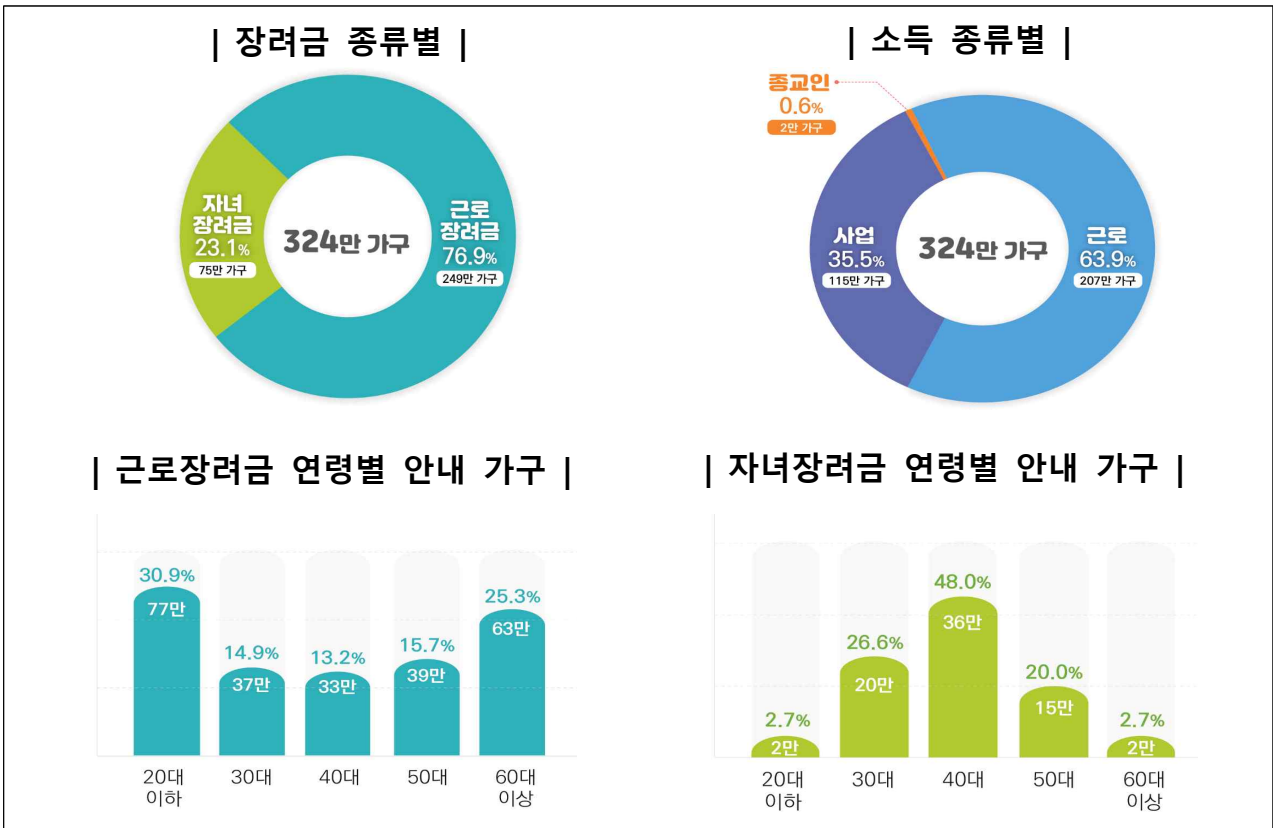
참고 1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·지급 일정 및 안내 현황

□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·지급 일정



□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



참고 2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및 지급액

신청요건

≫ '25년에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가구유형	가구원 요건 (‘25.12.31.기준)	④소득 요건(부부합산) (‘25년 연간 총소득)		⑥재산 요건 (‘25.6.1.기준)
		근로장려금	자녀장려금	
홀벌이가구	①배우자, ②18세 미만 부양자녀, ③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	3,200만 원 미만	7,000만 원 미만	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 재산 1억7천만원 이상, 2억4천만원 미만은 장려금 50%만 지급
맞벌이가구	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	4,400만 원 미만		
단독가구	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	2,200만 원 미만	-	

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서 총급여액 등*이 300만원 미만인 자

*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×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 등은 제외

② '07.1.2. 이후 출생 · ③ '55.12.31. 이전 출생 : ②③연간소득금액*이 100만원 이하인 자

*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·퇴직·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은 제외

④ 근로소득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×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 및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·퇴직·양도소득은 제외

⑤ 부동산·승용차(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), 분양권, 전세금*, 예금, 주식, 회원권 등 합계액

* 주택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(기준시가의 55%) 중 적은 금액 적용, 상가는 실제전세금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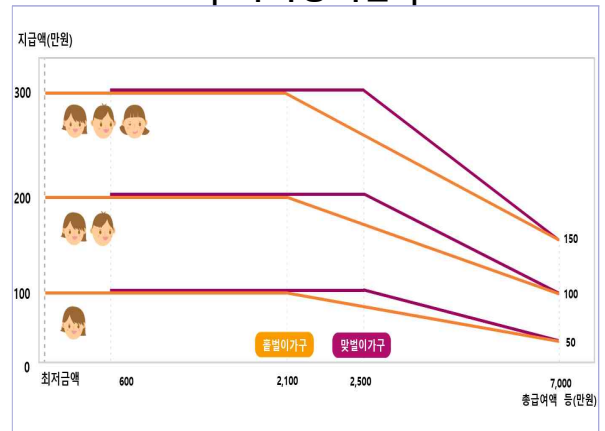
[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: 임대차계약을 제출하면 실제전세금으로 재산요건 기준을 판단합니다.]

지급액

| 근로장려금 |



| 자녀장려금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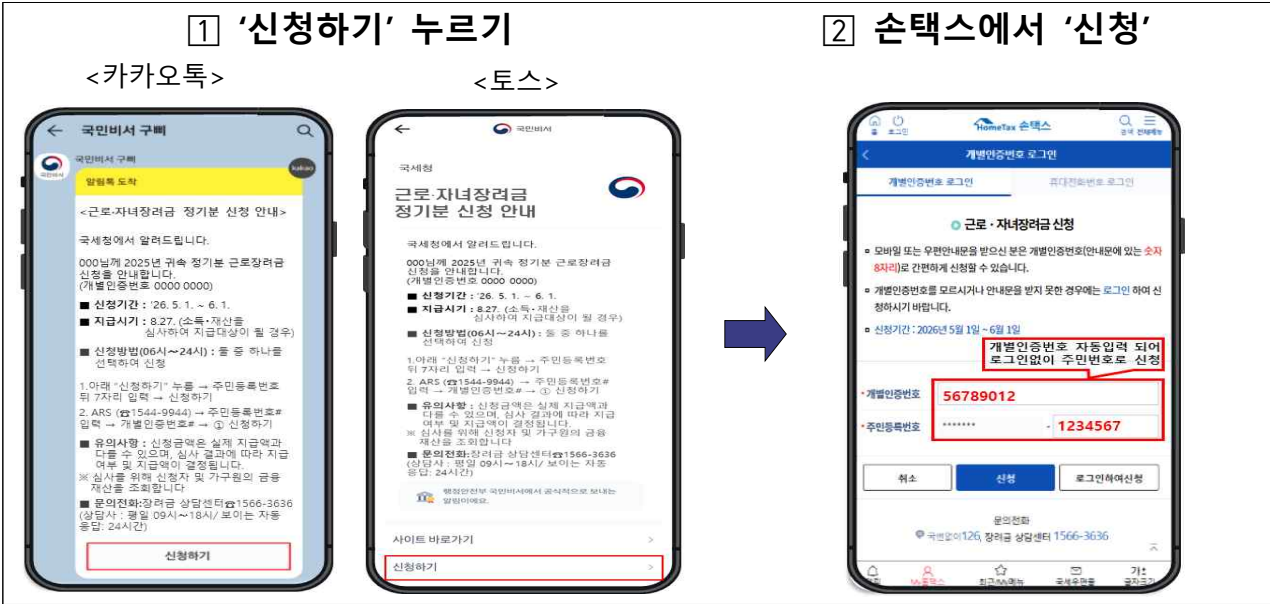
○ 신청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
참고 3

신청 방법

1 모바일 손택스 (이용시간 : 06시~24시)

□ (국민버서) ① 신청하기 → ②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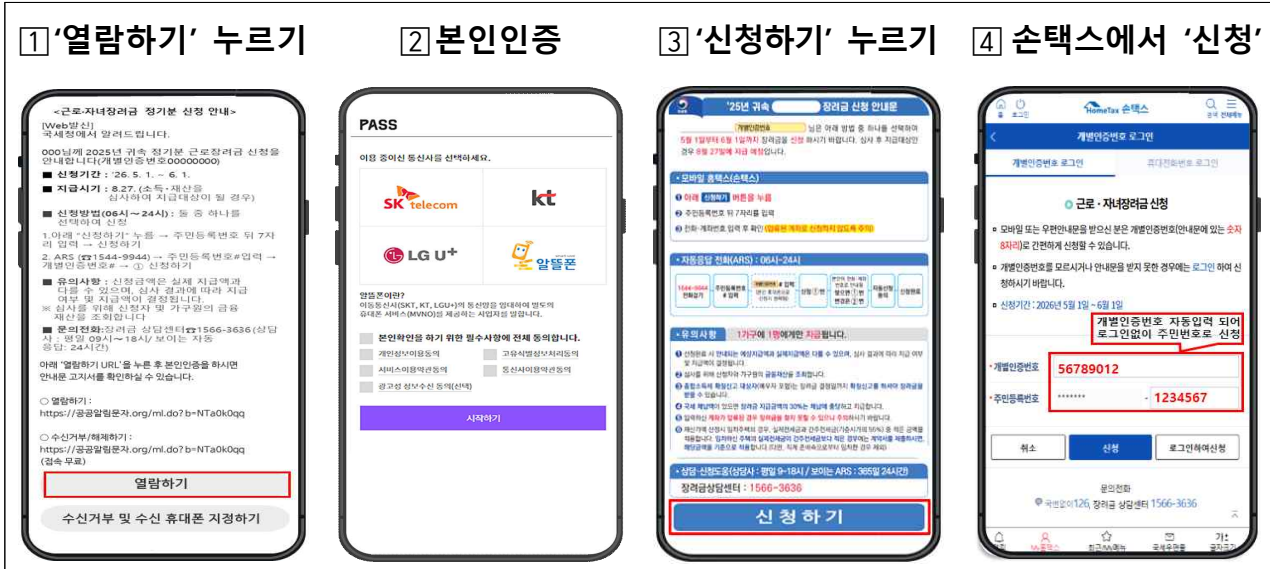


□ (카카오톡/네이버) ① 열람하기 → ② 본인인증 → ③ 신청하기 →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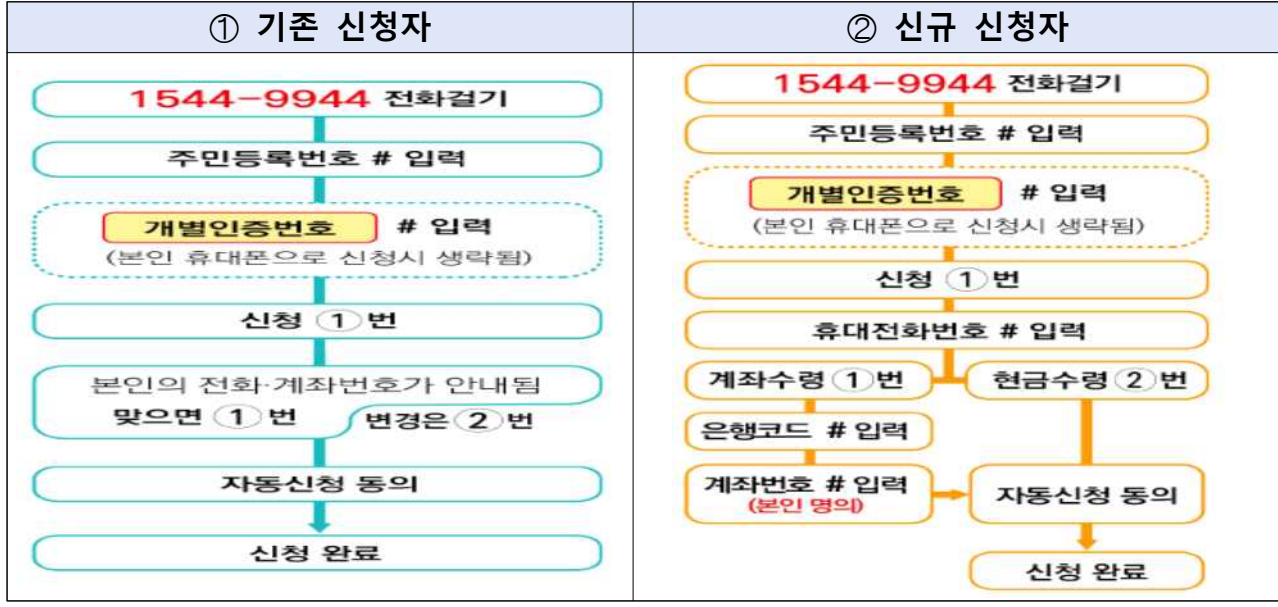
□ (문자메시지) ① 열람하기 → ② 본인인증 → ③ 신청하기 →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

○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의 안심마크([web 발신] 확인된 발신번호)가 표시되니 확인 후 스미싱 걱정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2 자동응답전화 (ARS 1544-9944)

☐ 모바일 안내문의 스미싱이 걱정되는 경우, ARS를 이용하여 개별인증번호 입력



3 「신청도움서비스」 (이용시간 : 09시~18시)

☐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(손)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(ARS) 이용이 어려운 경우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4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(이용시간 : 06시~24시)

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참고 4

주요 문답 사례

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
- 2025년에 근로소득·사업소득(전문직 사업자 제외)·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, [참고 2] “장려금 신청 요건”의 **가구원·소득·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**해야 합니다.

2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
- 서면 안내문(60세 이상)은 4월 말부터, **모바일 안내문은 5.4.부터 국민비서, 카카오, 네이버, 문자메시지** 등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- **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**은 국세청 **홈택스**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[홈택스] 나의 홈택스 > 나의 알림(우편물·안내문) >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

3 장려금 안내대상인지 또는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

- **안내대상 여부와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(PC, 모바일), ARS(☎1544-9944), 장려금 상담센터(☎1566-3636)**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[홈택스(PC)]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> 근로·자녀장려금 > 장려금 안내 정보
[홈택스(모바일)]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> 근로·자녀장려금 >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
[ARS] 1544-9944 > 근로·자녀장려금 > 주민등록번호 입력 >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
- ※ “안내대상 확인” 및 “자동신청 결과 확인”은 **5월 1일부터** 가능합니다.

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- **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**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**홈택스(PC, 모바일), 서면 신청만** 할 수 있습니다.
*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.

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
-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, **한 번의 신청**으로 신청이 **완료**됩니다.
- 이후 국세청에서 **심사**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**장려금**을 지급합니다.

6 1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- 장려금은 **가구 단위**로 지급하고 있으므로,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때에는 **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**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**장려금**을 지급합니다.
 -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
 - ② 산정된 장려금 수급액이 많은 자
 -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장려금을 받은 자
(다만,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)

7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어떻게 산정하며,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?

-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, 전세금은 '**실제전세금**'과 '**간주전세금**'(주택 기준시가의 55%) **중 적은 금액**으로 평가합니다.
- 간주전세금이 실제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, **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 - * 다만,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 전세금 가액과 관계없이 주택 기준시가의 100%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.

[사례] 문구점(소매업) 매출이 8천만 원인데, 홑벌이가구 소득기준 3,200만 원이 넘어 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?

-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,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, 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·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|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적용 사례 |

□ 문구점(소매업) 매출 8천만 원, 홑벌이가구, 18세 미만 자녀 2명, 재산합계액 2억 원

구분	장려금 계산		
총급여액 등	매출 8천만 원 × 업종별 조정률(소매업 25%) = 2천만 원		
재산합계액	2억 원		
장려금	합계	근로장려금	자녀장려금
수령액*	390만 원	190만 원	200만 원 (100만 원 × 2명)

* 총급여액 등이 2천만 원인 홑벌이 가구의 근로·자녀장려금 산정표상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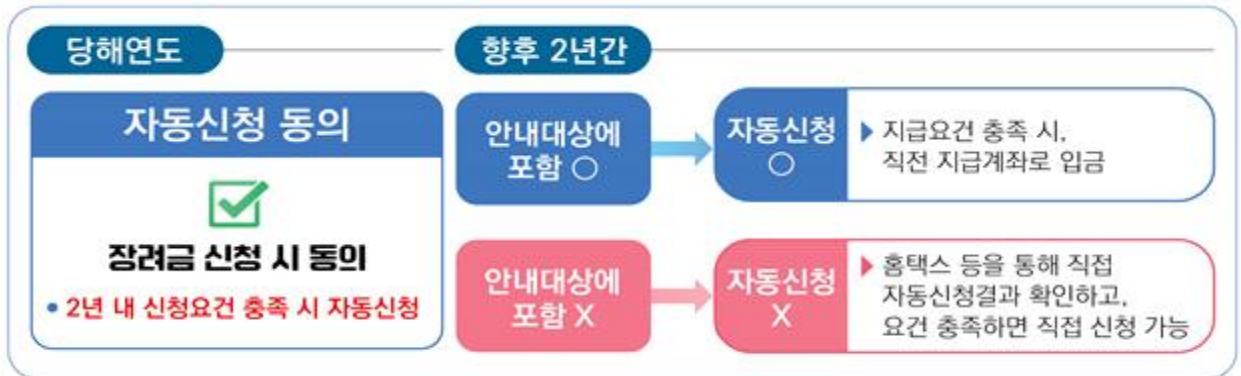
|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|

분류	업종	조정률
가	도매업	20%
나	농업·임업 및 어업, 소매업	25%
다	광업,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,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	30%
라	제조업, 음식점업(고급·유형주점업 제외), 부동산매매업	40%
마	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건설업	45%
바	고급·유형주점업, 숙박업, 운수업, 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업	55%
사	상품중개업,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	60%
아	금융업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인적용역 제외)	70%
자	부동산 관련 서비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75%
차	부동산임대업, 임대업(부동산 제외), 인적용역, 가구 내 고용 활동	90%

참고 5

근로·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

- 안내 대상자가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.
 - *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(안내문을 받은 경우)만 가능
- 사전 동의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



* [대상] ('23년) 65세 이상·중증 장애인 ⇨ ('24년) 60세 이상·중증 장애인 ⇨ ('25년) 모든 연령

참고 6

시각장애인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

- 장려금 안내대상 해당여부 및 신청방법 등 안내자료를 점자단말기나 점자 프린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합니다.
 - * 손택스(앱) 로그인 » 장려금 »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» 안내대상자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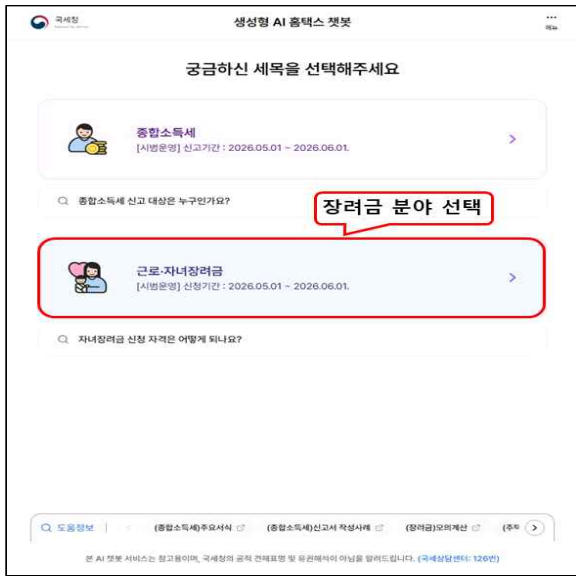


참고 7

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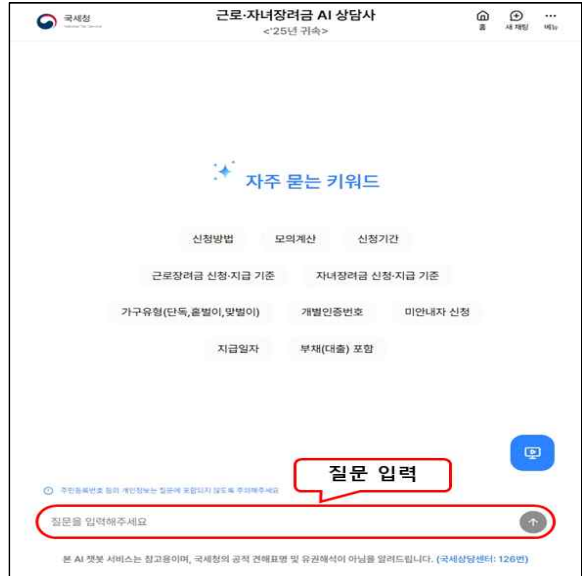
□ (화면경로)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» 홈택스 킷 메뉴 » 챗봇상담

1 첫 화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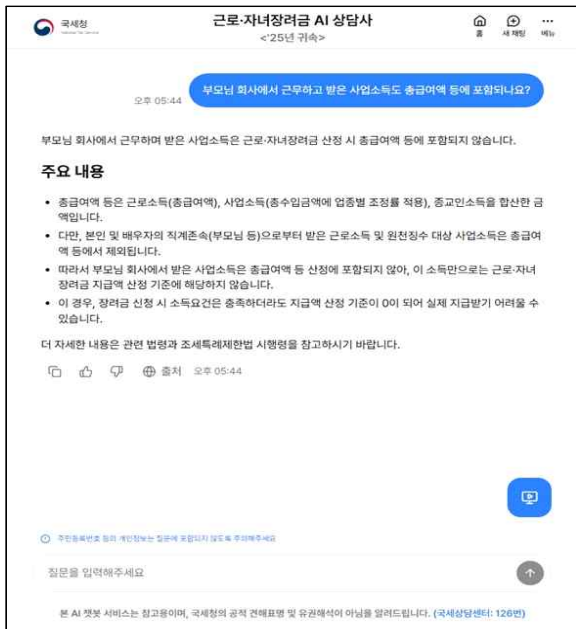
* 장려금 분야 선택

2 질문 입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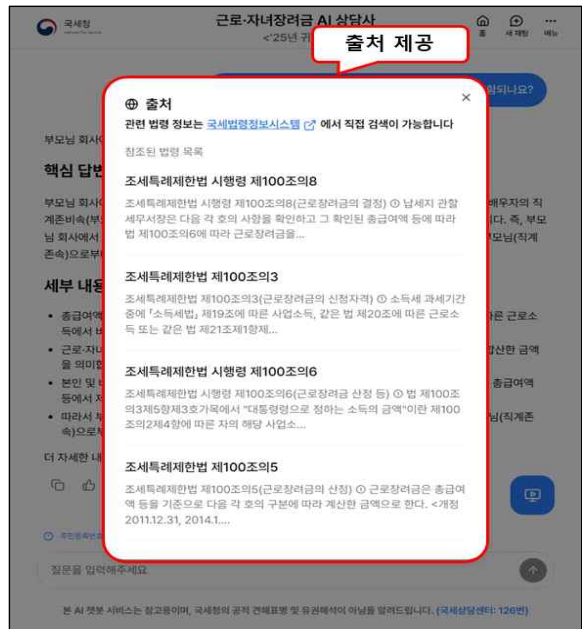
* 질문은 자유롭게 대화형으로 입력 가능
(예시) 부모님 회사에서 근무하고 받은
사업소득도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나요?

3 답변 제공



* 요건 참고사항 등 상세 답변 제공

4 출처 제공



* 답변 출처 및 근거법령 확인 가능